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수정·보강 내용 정리

<친구사이>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첫째,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다문화가정,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 다양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둘째,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사적 정보를 학생 동의 없이 가족,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 자살 등 위급 상황에서 해당학생에게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해시킨 후 상담교사와 혹은 심리상담사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진행하도록. 사적 정보 노출 최소화, 학생에게 동의 구해야.

셋째, 학생 건강권 중 정신적 건강도 포함.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

넷째,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소수자 인권 전문가 참여

다섯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에 덧붙여 성별정체성도 포함

참고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 정의(cited by Tackling LGBT Issue In Schools)

*생물학적 성(biologic sex):

염색체(XX-여성, XY-남성), 호르몬(에스트로젠/프로제스트론- 여성, 테스토스테론-남성), 내외부 생식기관의 차이에 의해 남성 혹은 여성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정의
인구의 1.7%는 간성(intersex: 한 몸에 남성,여성 특성을 함께 갖는 경우)으로 추정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개인이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을 ‘남성’, ‘여성’, 혹은 ‘다른 어떤 것’, 혹은 남성과 여성 사이 로 자신을 이해하는 근본적 감정.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가지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후 18개월-3세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성별정체성을 발달시키나, 일부에서는 그들의 성별정체성과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로 성전환자를 들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그들의 성별정체성에 더 완벽하게 조화로우 수 있도록 호르몬, 수술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성정체성(sexual identity)

; 우리가 자신의 성적인 이끌림, 감정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정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이성애자’, ‘무성애자’, ‘결정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성정체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여러 단계를 통하여 발전, 확립되며, 사람마다 기간과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내적인 욕구와 고민들은 다를 수 있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타인의 성에 기초하여 타인에게 감정적, 성적 매력, 이끌림을 갖는 것을 의미. 성적지향의 카테고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같은 성의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경우: 동성애(게이, 레즈비언)
- 한쪽 성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경우: 양성애
- 다른 성의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경우: 이성애
- 어떤 누군가에도 이끌리지 않는 경우: 무성애

성적지향은 유전자, 호르몬, 밝히지 못한 환경적 요소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믿어지며, 보통은 5세 이전에 이미 내면화 된다고 추정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의 자유 관련 학생인권조례 제안

학생인권조례 종교의 자유 조항 초안

- 제__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 및 교직원 은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학교 및 교직원 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5.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④ 학교는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학교 및 교직원 은 학생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 학부모나 후견인이 학생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I. [참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분석

1.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 1) 교사가 쉬는 시간 등에 학생들에게 단체로 기도, 예배를 강요.
- 2) 학생들에게 기도문, 찬송가 등을 외우게 함.
- 3) 매년 12월경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와 트리 등을 만들게 하고, 캐럴을 부르거나 리코더로 연주하게 하거나 영어로 쓰게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교실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밀 장식을 준비하게 하는 등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활동을 강요.
- 4)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공부를 강요.
- 5)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의 방식으로 108배를 하게 함.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 1) 기독교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기독교 종교수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거부는 용납하지 않음.
- 2) 교육청은 특정 종교수업 이외에도 다른 과목을 선택적으로 실시한다고 거짓보고 한 채 실제로는 모든 학생에게 선택권 없는 종교수업을 수강하게 함.
- 3) 창의적 재량시간에 법당에서 불교 종교수업을 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강요.

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1) 교사가 학생이 다니는 교회를 비방.
- 2) 교사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학생들을 전도.
- 3) 교사가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야”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많이 주실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함.
- 4) 교사가 말썽부리는 학생에게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을 함.
- 5) 교사가 학생에게 “하나님이 때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시늉을 내며 학생을 때림.
- 6)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려줌.
- 7) 교사가 학생들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종교적인 영상을 시청하게 함.
- 8) 교장이 조회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종교이야기를 하거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학생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 줌.

4.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1) 학교행사인 학예회를 교회에서 개최.
- 2) 교내 합창대회를 교회에서 개최.

5.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 1) 교회에서 하는 학예회 등의 학교 행사에 불참할 경우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반영.

- 2) 교사가 학생에게 성경공부를 시키고 성경공부를 한 학생에게만 돈을 줌.
- 3) 교사가 전도한 교회에 다니는 학생과 다니지 않는 학생을 차별.

<장애쪽 제안>

- 1. 장애학생 의견 반영. 학생회 구성에 참여권 보장 등
- 2.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부분 : 차별 금지 등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과도한 보호 금지 방안
- 3. 임의로 학생의 욕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 포함
- 4. 활동 보조, 장애통합교육보조원 등 동성 보조 문제

<청소년쪽 제안>

- 1.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금지(누구랑 만나지 마, 사귀지 마 등)
- 2. 수준별 교육, 성적에 따른 차별 구체화
- 3. 외부 활동(교외 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명시 필요
: 예 - 학외 집회 자유 보장 등
- 4. 학칙 재개정 과정에 학생회가 아닌 학생총회 등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5. 학생인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입증 책임을 학교에 물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6. 휴식권 관련 조항 구체화
- 7. 기숙사 학교를 고려하여 추가할 조항 없는지 살펴보기
- 8. 학생회 등 자치 기구 권한 구체화

[참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중 학생자치활동 관련

4. 학생 자치와 참여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교육 주체로서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모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학생은 또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 보장받아야 한다.

■ 학생 자치와 참여 기반의 조성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학교당국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 이루어

어지고 있지 않은지,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4-1. 자치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64조

학생 자치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지, 학교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공식적인 학생 참여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모여 활동할 공간과 자치 활동을 홍보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율적인 모임 운영이 가능한지 등 필요한 뒷받침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4-2. 학급단위의 자치활동 활성화

학급 단위에서 학생 자치와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학교 수준의 학생 자치와 참여도 활성화되기 힘들다. 학급 임원의 민주적 직선, 학급회의의 정례적 개최, 자유로운 안건 발의와 민주적 토론, 의결권 보장 등이 이루어져 있는지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4-3. 학교당국과의 면담권 보장

학생이 학교당국에게 면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의 방문 요청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4-4. 자치와 참여에 대한 교육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자치와 참여의 의미를 알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배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보아야 한다.

4-5. 학생 보호자의 참여 존중

학부모회 등 학생 보호자의 참여는 학생 자치와 참여를 보완하는 활동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 보호자가 기자재 구입, 행사 동원, 행사물품 준비 등을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요구받거나 참여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 행사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참여를 요청할 때에는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 대표 기구로서의 학생회(전교어린이회)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민주적으로 구성되

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회를 학생 대표 기구로서 학생회의 활동과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4-6. 입후보 자격 제한 금지

학교당국은 학생대표의 입후보 자격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둘 수 없다. 부당한 제한으로는 교사의 추천, 성적, 징계 경력, 품행, 종교, 가정의 경제형편 등이 포함된다. 어떤 후보자가 대표로 적합한지는 유권자인 학생이 판단할 몫이다. 또한 학교당국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4-7. 대표 선출의 민주성

학생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 참여를 제한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선거일을 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로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학교당국의 사후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학생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4-8. 학생회의 권한 확보

학생회의 민주적,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권한을 포함하여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학생회칙,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
-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4-9. 사전·사후 간섭의 금지

학교당국은 학생회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사전·사후 승인 절차로 인해 학생회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도교사나 지도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을 제공하는 데 있다.

4-10.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등 학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건이 다루어질 때, 학교당국은 미리 안건을 공개하고 학생대표의 참석을 요청하여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대표의 참여는 의결과정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4-11. 학생회 활동의 민주성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통>

- 노력하여야 한다,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등등 표현 수정